

이천시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04. 12. 20(월)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2월 9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이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2차(2004. 12. 18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- 읍·면·동 종합복지회관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와 조례 시행 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시설 본연의 기능·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 “복지관”이라는 명칭을 주민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“복지회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- 복지회관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중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정리. “사용금지”를 “사용제한”으로 “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관서에서”는 관공서나 이에 준하는 관서는 공공복리를 기본으로 하기에 이를 삭제하고 “주민복지향상과”를 삽입함(안 제5조, 제6조)

-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읍·면장이 관掌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(안 제13조)
-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미비 사항을 “지방재정법 및 이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” 준용 규정을 신설(안 제14조)
- 76년 3월 13일 제정 공포 후 현재까지 정비 없이 운영되어오던 별표의 복지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(안 별표2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한 집회 및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, 적정 수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시행 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
- 시설 본연의 기능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 「복지관」이라는 제명과 제3조, 제5조 내지 제9조, 제11조 및 제12조 중 명칭을 주민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「복지회관」으로 조문을 자구 수정하였고
- 안 제1조(목적) 조항에 「시민의 복지와 문화향상을 위한 집회 및 예술 행사 등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둔다」를 「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」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
- 안제2조에 「(위치) 복지관은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둔다」를 「(명칭 및 위치)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이 한다」로 조문을 자구 수정하였고
- 안제4조에 「(사용기간) ①복지관의 사용기간은 다음에 의하여」를 「(사용구분) 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」로 자구 수정 하였으며
- 안제5조의 「(사용금지)」를 「(사용제한)」으로 자구 수정 하였으고
- 안제6조의 (사용료) 복지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「별표」를 「별표2」로 「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관공서에서」를 「주민복지향상과」로 자구 수정 하였으며

- 안 제11조 「(원상복구)」를 「(원상복구 등)」으로 「그 손해」를 「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」로 자구 수정하였고
- 안 「제13조(권한의위임)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읍·면·동장에게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전부 및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」를 신설 하였으며
- 안 「제14조(준용) 이 조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(임대 등)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」를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판결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